



쓰레기수거 운반차량에서 추락



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작업 후 수거운반차량 투입구 작업대에 올라타서 이동하던 중 차량이 급하게 우회전을 하는 순간 차량에서 추락하여 사망



발생 원인

- 차량 후미 투입구 작업대에 탑승
 - 추락위험이 있는 청소차량 후미 투입구 작업대에 탑승하여 이동
- 안전모 착용 방법 부적절
 - 안전모 턱끈을 미체결한 상태로 착용

TIP

안전작업

1 안전한 승차석에 탑승 이동

- 쓰레기 수거 작업 근로자가 투입구 작업대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, 근거리 이동 시는 도보로 이동하고 원거리 이동 시에는 안전한 내부 승차석에 탑승하여 이동

2 안전모 착용 철저

- 쓰레기 수거 작업 시에는 차량의 갑작스런 이동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



승차석에 탑승



개인보호구 착용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 (주용도 외 사용제한)





쓰레기수거 운반차량에서 추락

안전한 승차석에 탑승하고 이동하세요!

